

#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1 출장 개요

### □ 출장목적

- WHO 팬데믹 협약협상 INB 13차 재개회의(Resumed session) 참석

### □ 과제명

- 2024 팬데믹 조약의 주요 쟁점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 □ 출장기간

- 2025.04.06. ~ 2025.04.13

### □ 출장국가(도시)

- 스위스(제네바)

### □ 출장자

- 신지영 부연구위원

###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2025.04.06	스위스(제네바)	-	·국가 간 이동 (한국 -> 스위스)
2025.04.07	스위스(제네바)	WHO 본부	·WHO 팬데믹 협약 협상 제13차 재개회의(INB 13 Resumed) 참석 및 의제대응
2025.04.08	스위스(제네바)		
2025.04.09	스위스(제네바)		
2025.04.10	스위스(제네바)		
2025.04.11	스위스(제네바)		
2025.04.12	대한민국/인천	-	·WHO 팬데믹 협약 협상 제13차 재개회의(INB 13 Resumed) 참석 및 의제대응 ·국가 간 이동 (스위스 -> 한국) ·시차로 인해 스위스 기준 12일 출국 후 한국 기준 13일 도착

## 2 출장 주요내용

※ 대표단에게만 오픈된 세션(Closed session)은 간략하게만 정리, 온라인으로 오픈된 세션(Open session)은 상세 내용 정리함

①	WHO 팬데믹 협약 협상 제13차 재개회의(INB 13 Resumed) 참석 및 의제대응
일 시	2025.04.07.(월)
장 소	스위스(제네바),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이하경 전문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지영 부연구위원

### ○ 세션 개최 및 의제 · 작업 프로그램 채택

- 사무총장 발언 진행함. 코로나로 인해 7백만 명이 가까이 사망하였고, 건강은 곧 안보의 문제임을 언급하였음. 또한 팬데믹 협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언하며 이번 주에 협약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음. 또한 팬데믹 협약은 어떤 국가의 주권도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음.
- INB13 재개회의는 온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관련 이해관계자는 매일 시작되는 짧은 오픈 세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음.
- 의제와 작업 프로그램을 채택한 후, INB 초안 작성 그룹(drafting group)은 작업 프로그램에서 합의한 대로 다음 조항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였음: 제1장(소개 및 전문), 제3장(제도적 장치 및 최종 조항), 제4조(팬데믹 예방 및 감시), 제5조(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원헬스 접근 방식), 제11조(팬데믹 관련 보건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 및 노하우 이전), 제12조(병원체 접근 및 이익 공유 시스템), 제13조(공급망 및 물류), 제13bis조(조달 및 유통)

### ○ 제12조(병원체 접근 및 이익 공유 시스템)

- PABS 문서(PABS Instrument) 관련 논의 시작하였으며 아직 합의가 되지않은 텍스트(옐로텍스트 및 블루텍스트) 논의에 집중하기로 함.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팬데믹 협정이 PABS 기구와 동시에 발효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팬데믹 협약 부속서를 협상할 때 참여하는 국제기관에 대해서는 국가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동(collaborate)”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더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관련 국제기관(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과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정의가 확실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데이터에 대한 오픈 액세스(open access to data)”의 표현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 공유와 관련된 내용에서 일부 선진국에서는 PABS의 이익공유는 기존의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체계(PIP Framework)와의 특성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였음(인플루엔자는 계절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연간 기여금이 필요함). 또한 PABS 문서와 다른 ABS(Access and Benefit-Sharing, 접근 및 이익공유)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 이익공유 비율에 대한 논의 진행되었으며, 선진국 측에서는 수치가 너무 높을 경우 제약업체의 협약 참여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제약업체가 WHO와 이러한 비율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언급한 국가도 있었음.
- 일부 개발도상국은 PHEIC 초기 단계부터의 예방이 중요하며 이 요소가 팬데믹 협약 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함.

②	WHO 팬데믹 협약 협상 제13차 재개회의(INB 13 Resumed) 참석 및 의제대응
일시	2025.04.08.(화)
장소	스위스(제네바),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이하경 전문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지영 부연구위원

○ 제4조(팬데믹 예방 및 감시)

- 선진국 국가 및 일부 국가에서는 공중보건 우선순위 내에 팬데믹 예방 및 조정된 다부문 감시가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또 다른 국가에서는 조항의 실행에 있어서 적용 가능한 국제표준과 지침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러한 표준과 지침이 수시로 변화하고 어떤 문서로든지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음.
- ‘동물, 농장 및 반려동물과 관련된 팬데믹 위험 조치’ 관련 논의 진행하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반려동물까지 다루는 것은 너무 많은 범위를 다루는 것이라고 하였음. 그러나 동물을 야생, 농장, 반려동물 등으로 세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사무국에서는 동물-인간 간의 상호 전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음.
- 전체 4조의 내용 및 흐름이 어느 정도 정해지기 전에는 4조의 일부 항목만 부분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음.
- ‘시설에서의 감염 예방 및 통제 조치’ 관련 논의 진행하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루는 기관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을 반대하며 시설의 종류가 무한정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함. 선진국 국가에서는 대체로 요양원 등 다양한 시설의

감염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other relevant facilities(기타 관련 시설)”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팬데믹 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벡터매개 질병의 감시, 위험 평가 및 예방’과 관련된 논의 진행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demographic)” 표현의 포함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일부 국가는 이주, 인구증가율 등 질병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인구통계학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언급함.
- ‘실험실 생물학적 위험 관리’ 관련 논의 진행. 의장단에서는 실험실 생물학적 안전, 실험실 생물학적 보안에 대한 ‘정책, 프로그램, 메커니즘’을 포함한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음.
- ‘항생제 내성 병원균’ 관련 논의 진행. 선진국 국가에서는 대체로 AMR(항생제 내성)을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AMR을 협약에서 어느정도 수준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한 국가는 기존의 ‘감염 예방 및 통제 조치’ 관련 내용이 이미 AMR을 어느 정도 다루고 있다고 발언하였으며, 또 다른 국가는 본 협약이 다루는 범위가 ‘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병원체’이기 때문에 이에 한정된 AMR로 범위를 국한하면 된다고 언급함.
-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 촉진’ 관련 논의 진행. 17조(범정부, 범사회 접근법)에서 이미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이 불필요하다는 일부 국가의 의견이 있었음. 그러나 또 다른 국가는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은 팬데믹 예방에 특별한 부가가치를 지닐 것이라며, 해당 내용의 유지를 주장함. 일부 국가에서는 해양 부문에 대한 관리는 타 조약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이유, 또는 야생동물, 환경, 기후와 같은 차원으로 해양 부문을 다루는 것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해양 부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음.
- ‘당사국 총회 역할’ 관련 논의 진행. 일부 국가는 COP의 역할이 단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이 아닌, 조치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이 되어야 함을 강조함.

③	WHO 팬데믹 협약 협상 제13차 재개회의(INB 13 Resumed) 참석 및 의제대응
일 시	2025.04.09.(수)
장 소	스위스(제네바),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이하경 전문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지영 부연구위원

○ 제11조(팬데믹 관련 보건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 및 노하우 이전)

- 기술 이전 관련 ‘상호 합의 된 조건(mutually agreed terms)’표현 사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일부 국가는 해당 표현이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동의를 요하는 표현이라는 점을 언급하였음. 그러나 또 다른 국가에서는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는 과정 및 그 과정의 결과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음. 논의에서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의 단어 사용 방식을 참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으나, 일부 국가는 FCTC와 팬데믹 협약의 맥락은 조금 다른 것임을 언급함.

- 노하우 관련 표현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노하우는 이동하거나 전달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협약에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가도 있었음.
- ‘라이선스 제공’ 관련 논의 진행. 제공과 관련된 표현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 ‘보건 제품 생산과 관련된 정보 공유’ 관련 논의 진행. 개발도상국에서는 대체로 ‘자발적인(voluntary)’ 표현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촉구하다(urge)’ 표현을 ‘장려하다(encourage)’ 정도로 강도를 낮춰서 표현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함.
- ‘팬데믹 관련 보건 제품의 제조를 가속화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협력’ 관련 논의 진행. 일부 국가는 당사국이 누구와 협력(cooperate)하라는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 13조(공급망 및 물류)

- ‘GSCL 네트워크 (Global Supply Chain and Logistics Network) 설립’ 관련 논의 진행. 인도주의적 환경(humanitarian settings)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강조를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 13bis조(조달 및 유통)

- ‘법적 위험 관리’와 관련된 논의 진행. 의장단에서는 해당 내용과 관련된 결의안 내용을 제시하였음.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법인 책임 면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언급하였음. 일부 선진국에서는 기업에 부과하는 책임이 오히려 백신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발 및 생산을 위축시키면 안된다고 하였음.

#### ○ 제4조(팬데믹 예방 및 감시)

- ‘동물과 인간 간의 감염병 전파’와 관련된 논의 진행함. 일부 국가는 ‘spill-back’ 표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또 다른 국가는 ‘야생생물(wildlife)’이라는 표현이 동식물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언급함.
- ‘식량 안보(Food security)’ 관련 표현을 어느 정도로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진행됨. 또한 AMR 관련 논의도 계속해서 진행되었음. ‘시설에서의 감염 예방 및 통제 조치’ 관련 논의도 계속하였으며, ‘장기 요양 시설(long-term care facilities)’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당사국 총회 역할’ 관련 논의 계속되었으며, 협약 내 IHR을 명시한 부분에서 단지 “IHR”로 명시된 경우도 있고, ‘amended IHR’로 명시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 차이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또한 to support/promote/further 중 어떤 용어를 쓸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됨.

④	WHO 팬데믹 협약 협상 제13차 재개회의(INB 13 Resumed) 참석 및 의제대응
일시	2025.04.10.(목)
장소	스위스(제네바),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이하경 전문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지영 부연구위원

○ 제3장(제도적 장치 및 최종 조항)

- 33조 서명, 35조 발효 관련 논의 진행되었고, 33조의 경우 부속서(Annex) 채택 이후 제네바의 세계보건기구 본부 및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서명하는 과정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내용 수정사항을 제시하였음.
- 31조 의정서(Protocol) 논의 진행되었고, 의정서에만 참여하는 국가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일부 국가에서는 향후 의정서에서 어떤 내용이 정의될지 모르고, 본 협약에는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국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였음.

○ 제12조(병원체 접근 및 이익 공유 시스템)

- 12조 논의 다시 진행됨. PABS의 개발과 구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새로 제안되었음. 또한 PABS 시스템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WHO와 체결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에 따라 실시간 생산량의 일정 수준을 WHO에 제공하는 내용에 대해 일부 수정안이 제시되었음. 기부 수준 및 제공 비율에 대한 논의가 계속됨. 일부 국가에서는 참여하는 기업이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VTD) 관련 기업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함.
-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의 배포와 GSCL 네트워크의 기능과 관련된 논의 진행되었으며, 이익 공유 조항에 대한 논의 계속됨.

-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 관련 논의 진행됨. 의장단에서는 해당 내용이 국가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맺은 집단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언급하였음. 또한 제약회사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조항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함. '신속한 접근(rapid access)' 표현을 어느정도로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음.

○ 제5조(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원헬스 접근 방식)

- 제5조의 논의 이전에 일부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제4조(팬데믹 예방 및 감시)의 내용을 추가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⑤	WHO 팬데믹 협약 협상 제13차 재개회의(INB 13 Resumed) 참석 및 의제대응
일 시	2025.04.11.(금)
장 소	스위스(제네바),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이하경 전문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지영 부연구위원

○ 제1장(소개 및 전문)

- 전문 중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자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 진행. 일부 선진국에서는 '국제법에 따르지 않는'에 대한 표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 전문 중 '국제 인권법 등을 포함하여 국제법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구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 진행.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각자의 주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내법' 표현을 포함하는 것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음.

- 제1조(용어 사용)에서 '원헬스 접근법' 정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또한 용어 사용에 '기술 및 관련 지식, 기술 및 전문 지식의 이전'과 관련된 정의를 추가해야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 제12조(병원체 접근 및 이익 공유 시스템)

- 12조 논의 다시 진행 됨. 향후 PABS 문서에서 포함되어야 할 조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또한 기부 수준 및 제공 비율에 대한 논의가 계속됨. 또한 PABS에 참여하는 제조업체를 어느 수준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제4조(팬데믹 예방 및 감시)

- 4조 논의 다시 진행 됨. 의장단에서는 합의가 어려운 문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야생동물과 가축을 포함한 환경'에서 환경(settings)을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제11조(팬데믹 관련 보건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 및 노하우 이전)

- 11조 논의 다시 진행 됨.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자발적인(voluntarily)’ 표현과 ‘상호 합의 된 조건(mutually agreed term)’ 표현 중 어떤 방식의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가 및 새로운 대체 표현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음.

○ 다음 회의 진행사항 논의

- 다양한 조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회의가 종료되고도 아직 많은 조항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추가로 INB13 resumed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⑥	회의 논의사항 정리 및 귀국
일 시	2025.04.12.(토)
장 소	스위스(제네바),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이하경 전문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지영 부연구위원
○ 회의 논의사항 정리 및 향후 발언문, 향후 회의 관련 대표단 내부 논의	
- 합의가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4월 15일에 INB13 resumed 회의가 추가로 진행 예정입니다.	
○ 제네바 국제공항 출발, 인천 도착 및 귀국	

3

### 출장 증빙 (세미나 및 회의현장 사진, 명함 등)

장 소 WHO 본부 회의장 및 회의 진행 사진

